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2. 5. 3 선고 2021나70495 판결 [사해행위 취소 등 청구의 소]

재판경과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2. 5. 3 선고 2021나70495 판결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10. 1 선고 2018가단5252789 판결

전문

원고, 항소인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(유한) 태평양

담당변호사 김은미

피고, 피항소인 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신

담당변호사 강성용

변론종결 2022. 4. 5.

판결선고 2022. 5. 3.

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10. 1. 선고 2018가단5252789 판결

주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5분의 4 지분에 관하여 2018.

11. 19. 체결된 재산분할약정을 취소한다.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5분의 4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11. 19. 접수 제21106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, 제1심판결 제3쪽 제14행부터 제1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, 원고가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‘2. 추가판단’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[고쳐 쓰는 부분]

“(원)고로 하여금 상속세 가산세를 부담하도록 하였다고 볼 수 없다.

다음으로 C가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금원이 망 D(이하 ‘망인’이라 한다)의 상속재산임을 전제로 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. 을13 내지 15호증(각 가지번호 포함, 이하 같다)의 각 기재에 의하면,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이 망인의 상속재산임을 전제로 의료법인 H(이하 ‘H’이라 한다)을 상대로 H에 대한 이 사건 금원의 출연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, 이 사건 금원을 망인의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

패소판결(광주고등법원 2022. 1. 19. 선고 2020나25191 판결)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22. 2.

4. 확정된 사실, 망인의 자녀인 G, F이 이 사건 금원이 망인의 상속재산임을 전제로 H를 상대로

상속회복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금원을 망인의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패소판결(서울고등법원 2021. 10. 28. 선고 2021나2014654 판결)을 선고받았고, 이에 대하여 G, F이 상고하였으나 2022. 2. 17. 상고 기각(대법원 2021다291927 판결)되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 위 인정사실에 앞서 본 바와 같이 광주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결과에서도 이 사건 금원은 망인의 상속재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 점(을12) 등을 더하여 보면, 이 사건 금원은 망인의 상속재산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, 갑10 내지 12, 17, 23, 24, 26, 27, 29 내지 45, 47, 49 내지 5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, 달리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.”

2. 추가판단

원고는 적어도 이 사건 금원은 부부 공유재산이라 할 것이므로 그 중 망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망인의 상속재산이라고 주장한다.

살피건대,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데, 을11, 15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,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망인과의 혼인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금원은 원고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, 갑10 내지 12, 17, 23, 24, 26, 27, 29 내지 45, 47, 49 내지 5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, 달리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(오히려 을11, 15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, 이 사건 금원에 망인의 자금이 입금되거나 이체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, 목포세무서장이 2017년경 및 2018년경 두 차례에 걸쳐 망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결정 등을 위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이 사건 금원이 망인으로부터의 증여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내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을 뿐이다).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3. 결론

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. 제1심판결을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조성필, 판사 이관형, 판사 이상아

별지